

#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최웅식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13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03월 28일

발 의 자 : 최웅식, 박순규, 홍성룡, 임종국,  
이병도, 우형찬, 김상훈, 전석기,  
김화숙, 성흠제, 이영실, 권영희,  
이광호 의원(13명)

## 1. 제안이유

- 풍수해, 감염병, 미세먼지, 지진 등 다양한 재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관리운용 부서를 재난관리 총괄부서로 변경하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의 정비를 위한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- 가. 조직 개편에 따라 복지본부장을 복지정책실장으로 변경하고 재난관리 기금 중 재난계정의 기금운용관을 물순환안전국장에서 안전총괄실장으로 변경(안 제6조)
- 나.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중 복지본부장을 복지정책실장으로, 물

순환안전국장을 안전총괄실장으로 변경(안 제8조)

다. 재정관리담당관을 재정균형발전담당관으로 변경(안 제8조)

라. 위원회의 재난계정 부문 간사 및 서기를 각각 안전총괄과장 및 안전총괄과 기금담당사무관으로 변경(안 제10조)

마. 위원의 임명 및 위촉을 시장의 권한으로 규정(안 제8조)

바. 그 밖에 법령의 인용조항을 현행에 맞게 수정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:

(1) 입법예고 결과 : 해당 없음

(2)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
(3) 부패영향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
(4) 비용추계 등의 자료 : 해당 없음

##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기본법 시행령 제74조”를 “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(이하 “기본법 시행령”이라 한다) 제74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“(특정관리대상시설)제2항에 따른 시설”을 “(특정관리대상지역)제2항에 따른 지역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제4호라목 중 “긴급안전조치”를 “안전조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8호 중 “기본법 제3조제1호다목”을 “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호가목 중 “복지본부장”을 “복지정책실장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물순환안전국장”을 “안전총괄실장”으로 한다.

제7조제4항 중 “시의회”를 “서울특별시의회”로 한다.

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안전총괄실장 및 복지정책 실장이 된다.

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”를 “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재정관리담당관”을 “재정균형발전담당관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하천관리과장”을 “안전총괄과장”으로, “하천관리과의”를 “안전총괄과의”로 한다.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1조(수당 등)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3조 중 “기본법 시행령 제74조제6호”를 “기본법 시행령 제74조제8호”로 한다.

제14조의 제목 “(준용)”을 “(기타)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용도) ① (생 략)</p> <p>② 재난계정의 자금은 <u>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</u>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</p> <p>1.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</p> <p>가. (생 략)</p> <p>나. <u>기본법 시행령 제32조(특정관리대상시설)제2항에 따른 시설(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)의 안전진단 및 보수·보강사업</u></p> <p>다. ~ 자. (생 략)</p> <p>2.·3. (생 략)</p> <p>4. 재난피해시설(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)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중 다음 각 목의 용도</p> <p>가. ~ 다. (생 략)</p> <p>라. <u>기본법 제31조(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)제4</u></p>	<p>제5조(용도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「<u>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</u>」(이하 "<u>기본법 시행령</u>"이라 한다) <u>제74조</u>-----.</p> <p>1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-----(<u>특정관리대상지역</u>)제2항에 따른 지역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다. ~ 자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·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라. -----</p> <p>----- <u>안전조치</u>-----</p>

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  
치의 이행

5. ~ 7. (생략)

8. 기본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  
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  
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 
대응 및 응급복구

9. · 10. (생략)

제6조(기금관리공무원) 기금을  
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기 위  
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  
리공무원을 둔다. 다만, 기금관  
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  
인행위(계약사무 포함) 및 지급  
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  
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  
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재무회  
계규칙」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  
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  
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  
다.

1. 기금운용관

가. 구호계정 - 시의 복지본  
부장

나. 재난계정 - 시의 물순환  
안전국장

2. (생략)

-----  
-----

5. ~ 7. (현행과 같음)

8.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-----  
-----  
-----

9. · 10. (현행과 같음)

제6조(기금관리공무원) -----  
-----  
-----  
-.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-----

가. ----- 복지정책  
실장

나. ----- 안전총괄  
실장

2.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운용계획 및 결산) ① ~

③ (생략)

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에 첨부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·② (생략)

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, 부위원장은 각각 물순환안전국장 및 복지본부장이 된다.

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

1. 재정관리담당관, 복지정책과장, 도로관리과장, 하천관리과장, 안전총괄과장

2·3. (생략)

⑤·⑥ (생략)

제10조(간사 등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호계정은 복지정책과장, 재난계정은 하천관리과장을 각각 간사로 하고 간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기 1명을 각 계정별로 두되 서

제7조(운용계획 및 결산) ① ~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 서울특별시의회-----.

제8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, 부위원장은 안전총괄실장 및 복지정책실장이 된다.

④ -----  
-----  
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재정균형발전담당관-----  
-----  
-----

2·3. (현행과 같음)

⑤·⑥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간사 등) ① -----  
-----  
----- 안전총괄과장-----  
-----  
-----

기는 각각 복지정책과 및 하천 관리과의 기금담당사무관이 된다.

② (생략)

제11조(수당 등)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,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,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 및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경우의 심사수당

2. 시의원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

제13조(대출조건) 기본법 시행령

- 안전총괄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수당 등)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3조(대출조건) 기본법 시행령



제74조제6호에 따른 대출금의  
이자율·상환기간 등 대출조건  
은 다른 기금의 대출조건과 시  
중금리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 
정한다.

제14조(준용) ①·② (생략)

제74조제8호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14조(기타) ①·② (현행과 같  
음)